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미래치안정책국장(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단 또는 치안감)하며, 중장기 미래치안 전략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수부장(경무관)을 신설하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광역수사단장(경무관 2명)을 신설하고, 치안상황 대응 및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경정 58명을 총경으로 직급 상향하면서 경찰서장,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상한을 규정하며, 경찰청의 아동 등 학대 대응 및 대화경찰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2명)을 증원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11명(경정 13명, 경감 8명, 경위 86명, 경사 180명, 경장 320명, 순경 450명, 8급 24명, 9급 29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44명(경사 30명, 경장 74명, 순경 4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경찰서에 수사·형사과 56개를 분과하면서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6

명(경위 5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하며,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04명(경감 75명, 경위 423명, 8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31명, 경감 423명, 7급 6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9명(경장 8명, 순경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712명(경위 37명, 경사 122명, 경장 328명, 순경 22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군사법원의 재판권 일부를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일부를 경찰이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인력 100명(경감 6명, 경위 59명, 경사 3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0.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안전국·교통국·경비국·공공안녕정보국·외사국”을 “미래치안정책국·생활안전국·교통국·경비국·공공안녕정보국·외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정보화장비정책관”을 “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3.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및 산업 육성
4. 경찰청 정보화사업 총괄·조정
5. 정보통신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경찰학교에 교수부를 둔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교수부)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3.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4.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생활지도·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44조제1항 중 “경무부·경비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수사부·안보수사부·생활안전부”를 “경무부·경비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수사부·광역수사단·안보수사부·생활안전부”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수사부 및”을 “수사부·광역수사단 및”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3조제1항 중 “경무부·공공안전부·수사부”를 “경무부·공공안전부·수사부·광역수사단”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3조제2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8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총경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79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총경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2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922”를 “1,9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1”을 “1,213”으로 하며, 총경 이하 “1,192”를 “1,194”로 하고, 일반직 계 “711”을 “713”으로 하며, 일반직 계 713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치안감 1”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2”를 “1”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5”를 “70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3,000”을 “134,20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8,636”을 “129,787”로 하며, 경무관 “73”을 “76”으로 하고, 총경 이하 “128,540”을 “129,688”로 하며, 일반직 계 “4,342”를 “4,396”으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4,307”을 “4,361”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6] <개정 2022. 5. 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6조제1항 관련)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생활안전국 1개 정책관등	1명
2) 생활안전국 1개 과	4명
3) 경무인사기획관 1개 담당관	2명
4) 수사기획조정관	1명
5) 수사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	9명
6) 수사국 1개 과	2명
7) 형사국	1명
8) 국가수사본부 1개 담당관	7명
9) 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	3명
10) 국가수사본부 1개 과	1명
11) 미래치안정책국	1명

2. 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명
2)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개 담당관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11개 담당관	12명
3) 시·도경찰청 12개 자치경찰부	12명
4) 경찰서 74개 수사심사관	74명
5)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2명
6)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1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90명
2)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71명
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명
4)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329명
5) 사건심사 업무(시·도경찰청)	109명
6)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00명
7)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8)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명
9) 사건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15명
10) 사건심사 업무(시·도경찰청)	18명
11) 사건심사 업무(시·도경찰청)	82명
12) 기록물 업무(시·도경찰청)	76명
13)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14)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5명
15)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69명
16)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6명
17)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시·도경찰청)	41명
18)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35명
19)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40명
20)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90명
21) 디지털증거분석 업무(시·도경찰청)	43명
22)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38명
2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25명
24) 국유재산 관리 업무(시·도경찰청)	45명
25)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6명
26) 사건심사 업무(시·도경찰청)	154명
27)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28) 사이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29) 지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53명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u>생활안전국 · 교통국 · 경비국 · 공공안전정보국 · 외사국</u>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u>미래치안정책국 · 생활안전국 · 교통국 · 경비국 · 공공안전정보국 · 외사국</u> -----.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u>기획조정관 · 경무인사기획관 · 정보화장비정책관</u> 및 치안상황관리관 각 1명을 둔다.	② ----- ----- ----- <u>기획조정관 · 경무인사기획관</u> ----- -----.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 조정</u>	<삭 제>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u>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u>	<삭 제>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3.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의 운영 및 관리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제33조(하부조직) <신 설>

(생 략)

<신 설>

다.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 ·

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의 총괄 · 조정

3.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및

산업 육성

4. 경찰청 정보화사업 총괄 · 조

정

5. 정보통신 운영 및 보안에 관

한 사항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에 관한 사항

제33조(하부조직) ① 중앙경찰학
교에 교수부를 둔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제33조의2(교수부) ① 중앙경찰학
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u>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u> 2. <u>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 관리</u> 3. <u>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u> 4. <u>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u> 5. <u>교육생의 생활지도·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u>
제4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u>경무부·경비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수사부·안보수사부·생활안전부</u> 및 <u>교통지도부</u> 를 둔다. ②·③ (생략)	제44조(하부조직) ① ----- ----- <u>경무부·경비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수사부·광역수사단·안보수사부·생활안전부</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수사차장은 <u>수사부</u> 및 <u>안보수사부</u> 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④ (생략)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수사부·광역수사단</u> 및 -----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사부) ① (생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제49조(수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신설>

제5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경무부·공공안전부·수사부 및 자치경찰부를 둔다.

② (생략)

<신설>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

<삭제>

7. ~ 9.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
----- 경무부·공공안전부·수사부·광역수사단 -----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신 설>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28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

 ----.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8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총경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79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

한으로 한다.

③ <신 설>

③ ~ ⑤ (생 략)

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총경 중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
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두는 보
조·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
장의 정원의 합은 52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922</u>	<u>1,926</u>	+4
경찰공무원 계	<u>1,211</u>	<u>1,213</u>	+2
·	·	·	
·	·	·	
총경 이하	<u>1,192</u>	<u>1,194</u>	+2
일반직 계	<u>711</u>	<u>713</u>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치안감	<신 설>	<u>1</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u>2</u>	<u>1</u>	-1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705</u>	<u>707</u>	+2
·	·	·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33,000</u>	• <u>134,205</u>	+1,205
경찰공무원 계	<u>128,636</u>	<u>129,787</u>	+1,151
•	•	•	
•	•	•	
경무관	<u>73</u>	<u>76</u>	+3
총경 이하	<u>128,540</u>	<u>129,688</u>	+1,148
•	•	•	
•	•	•	
일반직 계	<u>4,342</u>	<u>4,396</u>	+54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07</u>	<u>4,361</u>	+5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2